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3
----------	-----

2007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년 8월 31일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 영 규)

□ 제안이유

- 금천구와 구로구간 경계에 걸쳐 재건축된 한일U&I아파트와 주변지역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외 9필지(5,597.1㎡)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행정동 구로1동)으로 편입하고자 함.
- 나. 현재 구로구와 금천구간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U&I아파트 8개동 중 1개동(101동)은 금천구에, 2개동(102·103동)은 경계선상에, 5개동은 구로구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아파트 단지일대를 같은 행정구역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 호 연)

□ 검토요지

- 본 안건은 한 아파트단지가 두 자치구간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게 됨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것임.
- 금천구와 구로구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U&I아파트는 총 8개동으로 1개동은 금천구에, 2개동은 경계선상에, 5개동은 구로구 관할구역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입주이후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청소나 교육, 치안유지, 반사회 개최 등에 각기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아 오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이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관할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야기는 물론, 주민 상호간의 이질감 생성 등 많은 지역 문제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어 왔음.
- 따라서 동일 생활권인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본 의견청취 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외 9필지 5,597.1㎡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행정동 구로1동)으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경계 변경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조천휘 위원):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에 위치한 우이동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계신지?
답변(행정국장 권영규):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곳곳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집값상승과 관련이 있는 듯함.
- 질의(강감창 위원): 이러한 자치구 경계변경문제가 빈번하니 상설로 “경계조정추진위

원회"를 두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행정국장 권영규): 좋은 의견이시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대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 질의(이강수 위원): 이 안건에 의하면 10년간 재산세를 금천구가 갖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답변(행정국장 권영규): 자치구간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임.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재석위원 11명, 전원일치)
-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